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47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안규백 · 김남근 · 박지원
부승찬 · 황명선 · 이재관
차지호 · 소병훈 · 윤후덕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방위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의 방위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u>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령으로 정한다.